

코로나19로 인한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원제도

2021. 03.





목차



I. 특별고용지원 업종 제도 개요

1. 특별고용지원 업종 제도 개요	4
2. 지정 업종 범위 및 지원기간	5
3. 주요 지원내용	11

II. 사업별 세부 지원내용

〈사업주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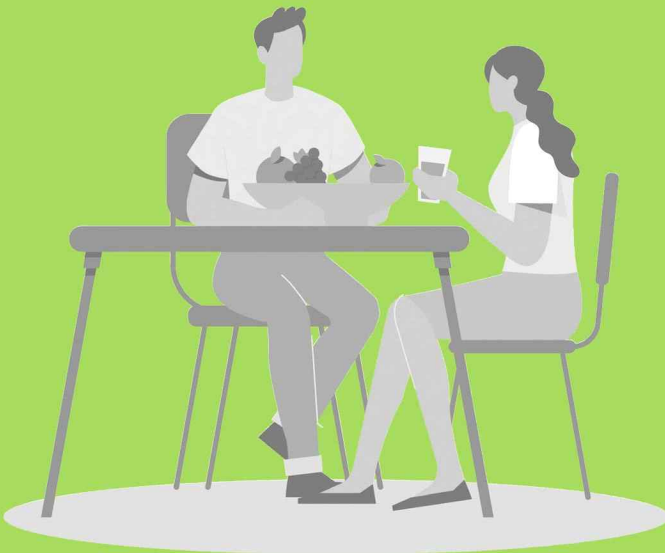
1. 고용유지지원금	16
2. 사업주 직업훈련 지원금	19
3.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및 체납처분 유예	21
4. 건강·국민연금보험료 연체금 미부과 등(보건복지부)	22
5.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 납부기한 연장 및 체납처분 유예	23
6.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지연신고 사업주 과태료 면제	25
7. 고용촉진장려금	26

〈근로자 지원〉

8. 훈련연장급여 지원	30
9.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31
10.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32
11. 국민취업지원제도	35
12. 국민내일배움카드	36
13. 체당금 공인노무사 조력 지원	38

I. 특별고용지원 업종 제도 개요

-
1. 특별고용지원 업종 제도 개요
 2. 지정 업종 범위 및 지원기간
 3. 주요 지원내용



1. 특별고용지원 업종 제도 개요

제도개요

- ✔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인한 사업규모의 축소, 사업의 전환 또는 폐업으로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업종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하여 사업주와 근로자를 지원하는 제도

지원대상

- ✔ 지정업종에 속하는 사업의 사업주 및 근로자(퇴직자 포함)

지원내용

- ✔ 사업주의 고용조정 및 고용안정, 근로자의 실업 예방, 실업자의 재취업 촉진 및 생활안정 등을 지원

지원기간

- ✔ 최초 지원기간 최대 2년, 1년의 범위에서 2회 연장 가능(최대 4년)



2. 지정 업종 범위 및 지원기간

관광·공연업 등

- ✔ 지원기간 : '20. 3. 16. ~ '22. 3. 31.
- ✔ 고용보험에 등록된 업종코드가 지원대상 업종에 해당하거나, 개별법에 따라 신고·등록한 업체 또는 승인·면허를 받은 업체

업종별 지원대상 확인방법

업종	분류 기준	
여행업	업종코드	• N752(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
	개별법	•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1호의 여행업이면서 제4조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한 업체
관광 숙박업	업종코드	• 55101(호텔업) • 55103(휴양콘도 운영업)
	개별법	•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의 관광숙박업*이면서 제4조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한 업체 * 호텔업(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휴양 콘도미니엄업
관광 운송업	업종코드	• 49232(전세버스 운송업) • 50111(외항 여객 운송업) • 50121(내항 여객 운송업) • 50201(내륙 수상 여객 및 화물 운송업) • 50202(항만 내 여객 운송업) • 51100(항공 여객 운송업)

업종	분류 기준	
	개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전세버스 운송사업을 등록한 업체 • 「해운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같은 법 제3조제1호~6호)의 종류별로 항로마다 해양수산부장관의 면허를 취득한 업체 또는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해상여객운송사업 승인을 받은 업체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관할관청의 면허를 받거나 관할관청에 신고한 업체 • 「항공사업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한 업체 및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소형항공운송사업 등록 업체
공 연 업	업종코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901(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개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연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공연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한 업체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업체

항공기취급업 등

- ☑ 지원기간 : '20. 4. 27. ~ '22. 3. 31.
 - 면세점 협력업체의 지원기간 : '20. 12. 21. ~ '22. 3. 31.
 -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지원기간 : '21. 4. 1. ~ '22. 3. 31.
- ☑ 고용보험에 등록된 업종코드에 해당하거나, 개별법 등에서 정한 방법(등록, 특허, 지정, 소관부처 확인 등)으로 확인된 업체

업종	분류 기준	
항공기취급업	업종코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2939(기타 항공 운송지원 서비스업)

업종	분류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4호의 국제회의업이면서 제4조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된 업체
공항버스	개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면허를 받은 업체 중 운행노선에 공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매출액 50% 이상이 공항노선과 관련된 업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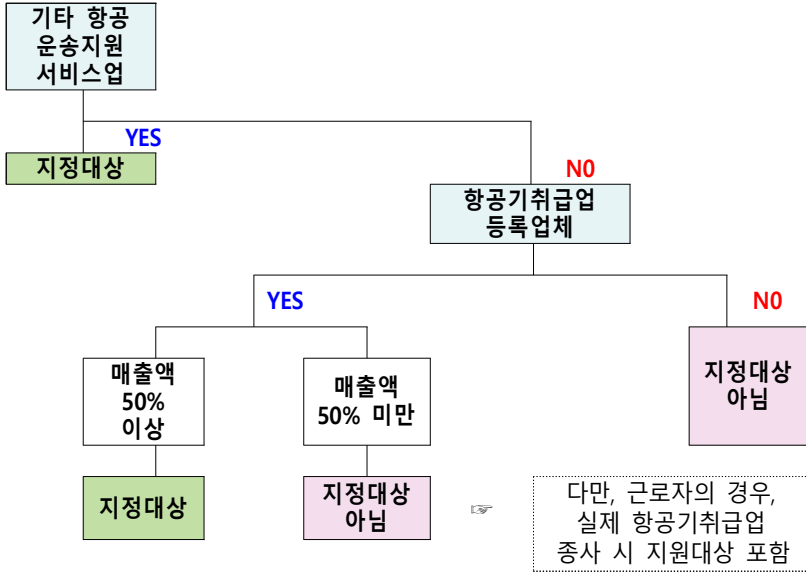
영화업 등

- ☑️ 지원기간 : '21. 4. 1. ~ '22. 3. 31.
- ☑️ 고용보험에 등록된 업종코드에 해당하거나, 개별법 등에서 정한 방법(등록, 특허, 지정, 소관부처 확인 등)으로 확인된 업체

업종	분류 기준	
영화업	업종코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59111(일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59112(애니메이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59113(광고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59120(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59130(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배급업) 59141(영화관 운영업)
	개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영화업자로 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신고수리한 업체이거나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으로 같은 법 제36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등록한 업체

업종	분류 기준	
수련시설	업종코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5614(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
	개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에 따른 청소년 수련시설로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등록한 업체
유원시설	업종코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1210(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개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6호에 따른 유원시설업으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허가한 업체이거나 신고 수리한 업체
외국인전용 카지노	개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카지노업으로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허가한 외국인 전용 카지노이거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44조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허가한 외국인 전용 카지노
항공기부품 제조업	업종코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1321(항공기용 엔진 제조업) • 31322(항공기용 부품 제조업)
노선버스	개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호의 가~라)으로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면허를 받거나 등록된 업체. 다만, 공영제 및 준공영제는 제외한다.

<참고> 항공기취급업 사업주 및 근로자 지원대상 판단을 위한 흐름도



3. 주요 지원내용

구분		일반		특별고용지원 업종
고용유지 지 원 금 (유급휴업· 휴직)	지원수준	우선지원대상기업 2/3 대규모기업 1/2~2/3		우선지원대상기업 90% 대규모기업 2/3~3/4
	지원한도	1일 6.6만원		1일 7만원 (대규모기업 6.6만원)
고용유지 지 원 금 (무급휴직)	지원요건	① 무급휴직 실시(30일) ② 무급휴직 전 1년 이내 유급휴업 또는 유급휴직 (3개월)		① 무급휴직 실시(30일) ② 무급휴직 전 1년 이내 유급휴업 또는 유급휴직 (1개월)
	지원한도	1일 6.6만원과 평균임금의 50% 범위내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무급휴직 지원기간 최초 180일은 일반과 동일하고, 추가 90일은 월 50만원 정액 지원
직업훈련	사 업 주 훈련지원	지원 한도	납부보험료의 100% (우선지원대상기업 240%)	납부보험료의 130% (우선지원대상기업 300%)
		훈련 비 지원 단가	우선지원대상기업 100% 1,000인 미만 60% 1,000인 이상 40%	우선지원대상기업 150% 1,000인 미만 100% 1,000인 이상 90%
	국민내일 배움카드	- 5년간 훈련비 300만원 지원 - 훈련비 자부담율 15~55%		- 5년간 훈련비 400만원 지원 - 훈련비 자부담율 0~20%
	훈련연장 급여요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4조 제1항 제1호~제4호 요건 모두 충족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4조 제1항의 제1호만 충족해도 지급대상 선정 가능
	생 계 비 대부한도	1명당 2천만원		1명당 3천만원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 체납처분 유예 ×		납부기한 연장 ○ 체납처분 유예 ○
건강보험료(복지부)		체납시 연체금 징수 체납처분 집행유예 ×		체납시 연체금 미부과 체납처분 집행유예 ○

코로나19로 인한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원제도

구분		일반	특별고용지원 업종
국민연금(복지부)		체납시 연체금 징수	체납시 연체금 미부과
장애인 의무고용부담금		납부기한 연장 × 체납처분 유예 ×	납부기한 연장 ○ 체납처분 유예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지연신고에 따른 사업주 과태료		부과 (1명당 3만원)	면제
국민취업지원제도II		중위소득 100% 이하 참여	특별고용지원 업종 실업자 소득 요건 면제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용자	소득요건	(임금감소·소액생계비) 3인가구 중위소득 2/3 이하의 70% (‘21년 월 186만원) (이외 생계비) 3인가구 중위소득 2/3 이하(‘21년 월 266만원)	(임금감소·소액생계비) 4인가구 중위소득 2/3 이하의 70% (‘21년 월 228만원) (이외 생계비) 4인가구 중위소 득 2/3 이하(‘21년 월 326만원)
	상환기간	최대 5년 (거치 1년/상환 3~4년)	최대 8년 (거치 1~3년/상환 3~5년)
	한도액	(임금체불생계비) 1천만원 (자녀학자금) (1자녀당) 연 5백만원	(임금체불생계비) 2천만원 (자녀학자금) (1자녀당) 연 7백만원 (2종류 이상 용자 시) 3천만원
	대상자	(자녀학자금) 고등학생 자녀	(자녀학자금) 고등학생 또는 대학생 자녀
고용촉진장려금		각 부처 운영 13개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자만 지원가능	고용노동부 운영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자까지 지원대상 확대 적용
체당금 공인노무사 조력지원	지원대상	상시 10명 미만의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상시 30명 미만의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까지 확대 적용

Ⅱ. 사업별 세부 지원내용

—
사업주 지원

근로자 지원



사업주 지원

1. 고용유지지원금
2. 사업주 직업훈련 지원금
3.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및 체납처분 유예
4. 건강·국민연금보험료 연체금 미부과 등 (보건복지부)
5.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 납부기한 연장 및 체납처분 유예
6.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지연신고 사업주 과태료 면제
7. 고용촉진장려금



1. 고용유지지원금

개요

- ✔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이하 “지정 업종”)의 지원대상 사업주의 고용유지조치(휴업, 휴직)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실업 예방

지원대상

- ✔ 지정업종의 지원대상 사업주가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원기간 동안 「고용보험법」 제21조에 따라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수당을 지급한 경우

지원내용

-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 인정요건 완화

구분	지원요건
유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정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른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봄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휴직기간이 시작되기 전 1년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 또는 피보험자의 20% 이상이 제2호에 따른 고용유지 조치를 1개월 이상 실시하고 30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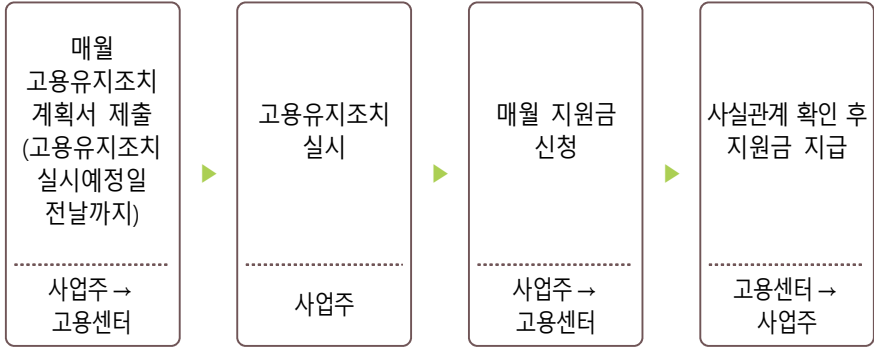
* 무급휴직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휴업 등 고용유지조치 요건”에 해당해야 함

☑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 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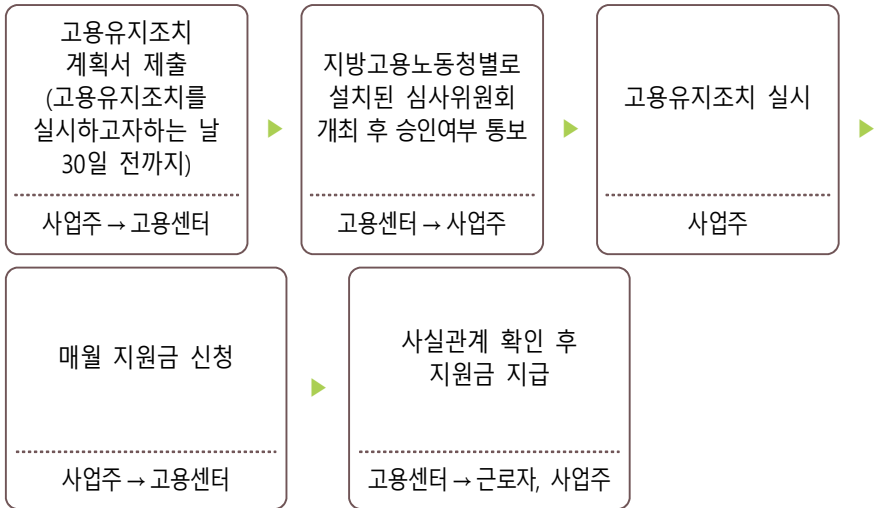
사업명	일반업종 지원 내용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원 내용
유급휴업 (총근로시간의 20%를 초과하여 단축근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수당의 2/3 (대규모기업 1/2~2/3) 지원 * 1일 66,000원 한도(연 180일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수당의 9/10(대규모기업 2/3~3/4) 지원 * 1일 7만원 한도(연 180일까지, 단 대규모기업은 1일 6.6만원 한도)
유급휴직 (1개월 이상 휴직 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주가 지급한 휴직수당의 2/3 (대규모기업 1/2~2/3) 지원 * 1일 66,000원 한도(연 180일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주가 지급한 휴직수당의 9/10(대규모기업 2/3~3/4) 지원 * 1일 7만원 한도(연 180일까지, 단 대규모기업은 1일 6.6만원 한도)
무급휴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심사위원회가 근로자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 결정 * 1일 66,000원 한도(최대 180일) ** 근로자 직업능력향상프로그램 1명당 10만원 범위 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심사위원회가 근로자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 결정 * 1일 66,000원 한도(최대 180일 +연장 90일) ↳ 연장 90일 월 50만원 지급 ** 근로자 직업능력향상프로그램 1명당 10만원 범위 내
무급휴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심사위원회가 근로자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 결정 * 1일 66,000원 한도(최대 180일) ** 근로자 직업능력향상프로그램 1명당 10만원 범위 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심사위원회가 근로자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 결정 * 1일 66,000원 한도(최대 180일 +연장 90일) ↳ 연장 90일 월 50만원 지급 ** 근로자 직업능력향상프로그램 1명당 10만원 범위 내

지원(신청) 절차

✔ 유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및 연락처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과(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2. 사업주 직업훈련 지원금

개요

- ✔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할 경우 소요비용 일부를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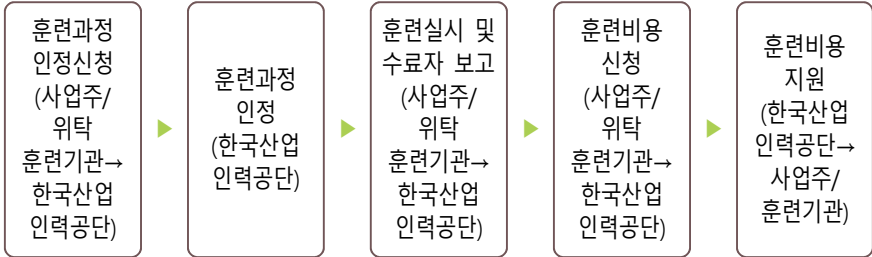
지원대상

- ✔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에 속하는 기업

지원내용

- * 특별고용지원 업종 고시 이후 시작하는 직업훈련과정부터 적용
- ✔ 특별고용지원 업종 기업이 소속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훈련비 우대 지원
 -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규정 제12조 별표 2에 따른 지원 단가의 150%
 - (1,000인 미만 기업)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규정 제12조 별표 2에 따른 지원 단가의 100%
 - (1,000인 이상 기업)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규정 제12조 별표 2에 따른 지원 단가의 90%
- ✔ 사업주가 해당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의 100분의 130(우선지원 대상 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00)

지원(신청) 절차



신청 및 연락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콜센터(1644-8100)

3.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및 체납처분 유예

개요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및 체납처분 유예를 통해 경제적 부담 완화

지원대상

- ✔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에 속하는 기업

지원내용

- ✔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된 기업의 신청을 받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및 체납처분 집행유예**

*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원기간 연장 및 추가 지정에 따른 '21.4월분 ~'22.3월분 고용·산재보험료의 납부기한 연장 (각 6개월씩 연장)

**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원기간 동안 고용·산재보험료 체납처분 유예

지원(신청) 절차

- ✔ 사업장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납부기한 연장 및 체납처분 유예 신청



신청 및 연락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4. 건강·국민연금보험료 연체금 미부과 등(보건복지부)

개요

- ✔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적용사업장 중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연체금 미부과(징수 예외) 및 체납처분 유예

지원대상

- ✔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에 속하는 기업

지원내용

- ✔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체납시 연체금 미부과
 - ✔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원기간 동안 건강보험료 체납처분 유예 (국민연금보험료는 체납처분 유예 대상 아님)
 -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일 이후 새로운 체납처분을 유예하고 지정일 이전 유효한 체납처분 건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절차를 중지*
- *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일 이전의 체납처분 건에 대해서는 다음 단계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뿐이며 체납처분을 취소하거나 해제하는 것은 아님

지원(신청) 절차

- ✔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업장 관할 지사에 연체료 미부과 또는 체납처분 유예 신청



신청 및 연락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5.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 납부기한 연장 및 체납처분 유예

개요

- ☑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 납부기한 연장 등으로 경제적 부담 완화

지원대상

- ☑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에 속하는 기업

지원내용

- ☑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 등 납부기한 연장 및 체납처분 유예
 -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등 부담금 등의 체납처분 집행을 유예
 - * 상시 100인 이상 고용하는 사업주 중 장애인을 의무고용률 미만 고용한 사업주는 미달장애인수에 대해 고용부담금을 납부
(월부담금 = 해당 월 고용의무 미달인원 × 장애인 고용률에 따른 부담기초액 및 가산금액)

구 분		2020년도	2021년도
의무고용 인원대비	3/4 이상인 경우 미달고용인원(1명당)	1,078,000원	1,094,000원
	1/2 이상~3/4 미만인 경우 미달고용인원	1,142,680원	1,159,640원
고용 장애인 비율	1/4 이상~1/2 미만인 경우 미달고용인원	1,293,600원	1,312,800원
	1/4 미만인 경우 미달고용인원	1,509,200원	1,531,600원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은 달의 미달고용인원	1,795,310원	1,822,480원

신고기한까지 부담금을 신고하지 않거나 잘못 신고한 경우 가산금(100분의 10)을,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연체금(36개월간 매월 부담금의 1만분의 75)을 부과

지원(신청) 절차

- ☑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사에 부담금 등 유예신청

신청 및 연락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연락처 및 소재지

기관명	전화	소재지
본부	031) 728-7001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 173번길 59 (구미동)
서울지역본부	02) 6320-7000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11층 (충무로3가)
부산지역본부	051) 640-9800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일로 181, 10층 (범천동)
대구지역본부	053) 288-1500	대구광역시 남구 중앙대로 200, 13층 (대명동)
광주지역본부	062) 448-1199	광주광역시 서구 운천로 273, 12층 (치평동)
대전지역본부	042) 620-6200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36, 13층 (월평동)
경기지역본부	031) 300-0906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518, 4층 (인계동)
서울남부지사	02) 6004-10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2길 8, 6층 (영등포동 2가)
서울동부지사	02) 2146-3500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289, 11층 (신천동)
인천지사	032) 242-1004	인천광역시 부평구 무네미로 478, 1층 (구산동)
울산지사	052) 226-1004	울산광역시 남구 변영로 131, 10층 (달동)
경기북부지사	031) 850-4500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 24, 3층 (의정부동 신도 아크리티움)
경기동부지사	031) 600-0209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 8, 2층 (구미동)
강원지사	033) 737-6620	강원도 원주시 호저로 47, 4층 (우산동)
충북지사	043) 230-64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50, 3층 (가경동)
충남지사	041) 629-6000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만남로 82, 3층 (신부동)
전북지사	063) 240-240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751, 11층 (인후동2가)
전남지사	061) 240-0700	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 118, 7층 (호남동)
경북지사	054) 450-3000	경상북도 구미시 송정대로 73, 6층 (송정동)
경남지사	055) 225-8006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07, 6층 (중앙동)
제주지사	064) 710-501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동광로 30, 6층 (이도이동)

6.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지연신고 사업주 과태료 면제

개요 및 지원내용

-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 등을 기간 내에 하지 아니하였으나, 자진해서 신고한 경우 지연신고 1명당 부과되는 과태료 3만원 면제

* (대상 신고)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신고, (일용)근로내용 확인 신고, 이직확인서, 기존에 제출된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 신고 사항 정정

- ✔ 다만, 자진해서 신고한 경우에만 과태료 면제 대상이며, 미제출이 적발되어 신고한 경우 또는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지원대상

- ✔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에 속하는 기업*

* 기업의 사업주뿐만 아니라, 보험사무대행기관의 대표자 등 「고용보험법」에 따른 피보험자격 신고 관련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자 포함

지원(신청) 절차

- ✔ 지원대상 사업주가 피보험자격 등 지연신고 시 과태료 면제 처리(별도 과태료 면제 신청 절차는 없음)

*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등을 지연하여 신고하더라도,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노동(지)청으로 과태료 부과의뢰 미실시

- ✔ 근로복지공단에서 과태료 면제 등 관련 안내 실시



신청 및 연락처 :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

7. 고용촉진장려금

개요

-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기업에서 지정일 이후 이직한 근로자 중 지원기간내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을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한 사업주에게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

*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일 이후 이직한 자가 구직등록 후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지원기간 중 이수한 경우 이수일로부터 1년간 지원대상이 됨

지원대상

- 전국 모든 사업주(우선지원대상기업, 대규모 기업)

지원내용

- 사업주가 지급한 인건비의 일부를 1년의 범위에서 6개월 단위로 지원

* 지급대상기간 동안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

구분	연간 지원금액	6개월 지급액
우선지원 대상기업	720만원	360만원
대규모 기업	360만원	180만원

지원(신청) 절차



신청 및 연락처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과(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 참고 ■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고용센터 취업지원프로그램

연번	프로그램명	지원대상	주요내용
1	성취 프로그램	장기구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실업 예방, (재)취업 촉진 • 자신감과 자존감 회복, 구직동기 부여 및 구직기술 향상
2	행복오름프로그램	기초생활수급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의욕 강화, 자신에 대한 이해 및 강점발견 • 구직기술 습득, 직장적응 등
3	(WIND)결혼이민자 취업지원프로그램	결혼이민자(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의욕 제고 • 구직기술 향상, 직장생활이해
4	단기취업특강(8종)	구직급여수급자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력서, 자기소개서, 면접 요령, 근로기준법, 취업정보 수집 등
5	일자리희망 프로그램	취업취약계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센터에서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명칭 및 방식으로 운영하는 취업취약계층 대상 특화 프로그램
6	단기집단상담(10종)	구직급여수급자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복한 대화 이끌기, 취업어려움 극복하기, 강점분석, 취업목표 정하기 등
7	(Hi)고졸청년 취업지원프로그램	고졸(예정) 취업준비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의욕 제고 • 취업기술과 직장적응력 강화
8	(청취력)청년취업 역량프로그램	청년구직자(만19~34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량기반 채용관행에 적합한 구직기술 강화 및 역량 개발계획 수립
9	(allA)청년니트진로 역량강화프로그램	취업취약 청년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감 제고 및 생애비전 설계
10	행복내일 취업지원프로그램	경제적 취약계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기이해, 강점발견, 구직기술 습득, 직장적응 이해 등
11	(CAP+)청년층 직업지도프로그램	청년(15~34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리적 직업선택 지원 • 자기탐색, 기업탐색, 서류작성 • 모의면접 등 구직기술 향상
12	취업희망프로그램	심리적 취약계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감 향상 및 근로의욕 증진 • 사회성(대인관계) 향상
13	성장(성실) 프로그램	중장년층(50세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자신감 제고 • 구직기술 향상
14	주부재취업설계 프로그램	경력단절 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취업분야 선정, 재진입 계획 수립 및 실천방안 모색
15	(V-TAP)제대군인 취업지원프로그램	제대(예정)군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직준비 동기부여 • 일자리 탐색, 전직계획 수립
16	취업성공패키지	취업취약계층 청·장년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상담·진단, 직업훈련, 취업알선

근로자 지원

- 8. 훈련연장급여 지원
- 9.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 10.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 11. 국민취업지원제도
- 12. 국민내일배움카드
- 13. 체당금 공인노무사 조력 지원



8. 훈련연장급여 지원

개요

- ☑ 구직급여 수혜자가 고용센터가 지시한 직업훈련에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를 초과하여 참여하는 기간 동안 구직급여 연장 지급(최대 2년)

지원대상

- ☑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에서 이직한 구직급여 수혜자

대상훈련 과정

- ☑ 「훈련지시대상 훈련과정 및 직종 고시」 각 호의 훈련과정*

* 국가기간·전략 산업직종, 실업자 등의 계좌적합훈련과정,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직종), 공공직업훈련시설에서 실시되는 기능사 양성훈련 등

- ☑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중 해당 직업안정 기관장이 지역경제, 고용상황, 훈련과정 취업률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는 과정

지원내용

- ☑ 구직급여 수혜기간을 초과하여 훈련에 참여하는 날에 대해 훈련연장급여 지원(최장 2년)

지원(신청) 절차

- ☑ 구직급여 수혜자가 직업훈련 참여를 원하는 경우 고용센터 상담을 거쳐 훈련연장급여 신청



신청 및 연락처 : 고용센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9.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개요

- ✓ 취약계층(비정규직 근로자, 전직실업자 등)이 생계비에 대한 부담 없이 장기간 체계적인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생계비 대부 지원

지원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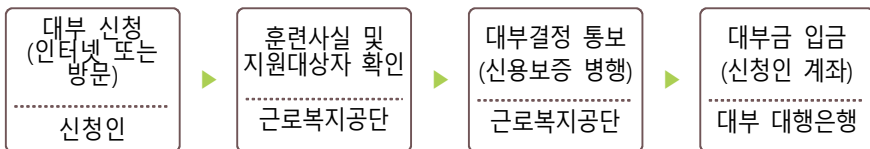
- ✓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규정」 제10조의 직업훈련에 3주 이상 참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전직 실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산재보험 적용), 휴·폐업한 자영업자로서 가구별 연간 소득금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인 사람

- * 실업급여 수급 중인 자는 제외
- ▶ 특별고용지원 업종은 소득요건 무관

지원내용

- ✓ 월 단위 200만원, 1인당 총 2,000만원 한도의 대부 지원
 - ▶ 특별고용지원 업종은 월 단위 300만원, 1인당 총 3,000만원 한도
- ✓ 연리 1%(신용보증료 별도), 최대 3년 거치 최대 5년 매월 균등 분할 상환

지원(신청) 절차



신청 및 연락처 : 근로복지넷(www.workdream.net),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

10.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용자

개요

- ☑ 특별고용지원 업종 저소득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의 혼례·장례 등 사유 발생 시 생활필수자금과 임금체불 생계비를 저리로 용자하여 생활안정에 기여

지원대상

- ☑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장 소속 근로자

지원내용

- ☑ 의료비, 자녀학자금, 임금감소생계비 등 생활안정자금 용자의 소득요건과 용자조건을 완화하고 용자 대상 및 한도 확대

용자 종류별 신청 요건

용자종류	내 용	지원대상 및 요건
①의료비	본인/피부양자 실 의료비용	○ 3개월 이상 근속 중 ○ 월평균소득이 중위소득(4인가구)의 2/3 ('21년 326만원*) 이하 - 비정규직 노동자 소득요건 비적용
②혼례비	본인/자녀 결혼비용	
③장례비	본인/부모 등 사망 경조비용	
④부모 요양비	본인/부모 노인성 질환 요양비용	
⑤자녀 학자금	고등/대학교 자녀 교육에 드는 비용	
⑥임금 감소 생계비	사업주의 경영상 조치로 임금이 감소하여 생활유지에 드는 비용 * 단, '20.7.31.까지는 위기경보(경계~심각)기간 특정 월 소득이 위기경보(경계) 직전 3개월간 소득 대비 30%이상	○ 6개월 이상 근속 중이고 신청일 이전 3개월간 월평균소득이 30% 이상 감소 ○ 용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 월평균소득이 중위소득(4인가구)의 2/3에 해당하는 금액의 70%('21년 228만원) 이하

용자종류	내 용	지원대상 및 요건
	감소하고 월평균 소득이 3인 가구 중위소득(388만원) 이하인 경우도 가능	
⑦소액 생계비	개인 및 기업 사정 등으로 소득이 감소함에 따라 생활 유지에 드는 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개월 이상 근속 중 ○ 개인사정, 계절사업 등으로 월소득이 직전 달에 비해 30% 이상 감소 ○ 용자대상 월소득이 중위소득(4인가구) 2/3의 70%(‘21년 228만원) 이하
⑧임금 체불 생계비	임금체불로 생활 유지에 드는 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일 현재 재직 중 또는 퇴직 후 6개월 이내 ○ 용자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 이상 체불 ○ 배우자 포함 연간 소득액이 중위소득(4인가구) 이하 (‘21년 5,852만원) - 건설일용근로자 노동자 소득요건 비적용

* 일용근로자 요건은 별도

용자한도 및 상환

- ✔ (용자한도) 2종류 이상 용자 시 1인당 용자 총 한도 3,000만원

혼례비	의료비 장례비	부모요양비	자녀 학자금	소액 생계비	임금감소 생계비	임금체불 생계비
1,250만원	1,000만원	1,000만원 (조)부모 1인당 연 500만원)	1,000만원 (1자녀 당 연 700만원)	200만원	1,000만원 (감소임금 내)	2,000만원 (재직자에 한함, 퇴직자 1천만원)

- ✔ (금리 및 상환) 연 1.5%, 1년 거치 3년 / 1년 거치 4년 / 2년 거치 4년 / 3년 거치 5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다만, 소액생계비는 1년 거치 1년 상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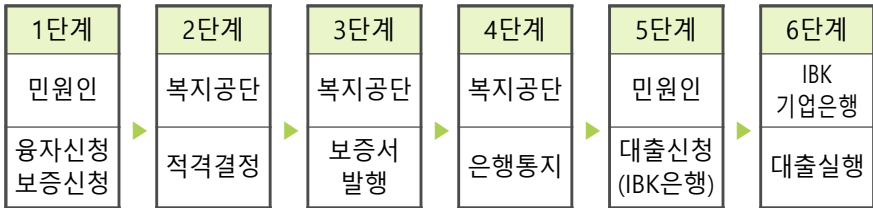
- ☑ (신용보증) 용자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공단이 신용보증지원

* 신용보증료 연 1%(임금체불생계비 1%) 별도 부담

적용시기

- ☑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한 지원요건 완화 및 지원 한도 확대 등은 지정일 이후 근로복지공단에 용자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

지원(신청) 절차



신청 및 연락처 : 근로복지넷(www.workdream.net),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

11. 국민취업지원제도

개요

- ✓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직자에게 개인별 취업 활동 계획에 따라 단계별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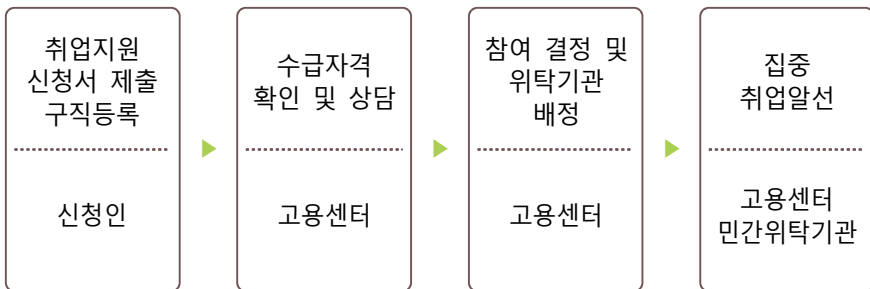
지원대상

- ✓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에 속하는 기업에서 근무하다 지원기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이직 후 현재 실업상태인 자

지원내용

- ✓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속하는 기업의 실직근로자’에 대한 국민취업지원제도 II의 소득요건 미적용
 - ▶ 프로그램 참여자를 채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촉진 장려금 지원

지원(신청) 절차



신청 및 연락처 : 고용센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12. 국민내일배움카드

개요

- ✔ 취·창업을 위해 기술·기능 습득이 필요한 실업자 등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 기회를 제공하여 (재)취·창업 촉진 및 생활안정 도모

지원대상

- ✔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에 속하는 대상 기업에 종사하는 재직자 또는 대상기업에서 근무하다 실직한 실업자

지원내용

- ✔ (지원 한도)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14조 제2항에 따라 지원 한도 100만원 추가 지원
* 1인당 지원 한도 300만원을 소진한 후 거주지 또는 소속 사업장을 관할 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방문하여 계좌한도 추가지원 신청서 제출
- ✔ (지원액)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46조 [별표4]에 따른 훈련비 지원율을 국민취업지원제도 I 유형 및 II 유형 저소득층(특정계층 포함) 적용



직종 평균 취업률 및 대상에 따른 훈련비 지원을

구 분	직종평균 취업률('17~'19년 종료과정)				
	70% 이상	60%이상 70%미만	50%이상 60%미만	40%이상 50%미만	40% 미만
근로장려금 수급자	92.5%	87.5%	82.5%	77.5%	72.5%
일반훈련생	85%	75%	65%	55%	45%
국민취업지원제도 II유형 중 청년 및 중장년			70%	60%	50%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 및 II유형 중 저소득층(특정계층포함)	100%				80%

지원(신청) 절차

- ✔ (신청방법)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www.hrd.go.kr) 신청 가능
- ✔ (신청절차) 카드발급 신청 ▶ 카드 발급



신청 및 연락처 : 고용센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13. 체당금 공인노무사 조력 지원

개요

- ☑ 영세 소규모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도산 등 사실 인정 및 일반체당금 신청을 하는 경우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국가는 체불근로자의 도산 등 사실인정 및 일반체당금 신청을 대리할 공인노무사를 지정해 주고, 추후 지정된 공인노무사에게 조력지원 비용을 지급

지원대상

- ☑ 전체 상시근로자 월평균 보수가 350만원 이하이면서 상시근로자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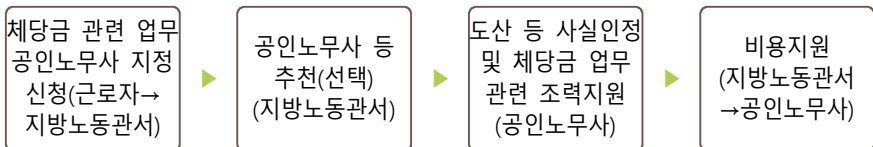
지원내용

- ☑ 일반적으로는 상시근로자 수 10명 미만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지원 대상이나,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시 상시근로자 수 30명 미만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까지 확대(그 외 요건은 동일)

적용시기

- ☑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원기간 내에 '체당금 관련 업무 지원 공인노무사 지정 신청서'를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한 경우 지원

지원(신청) 절차



신청 및 연락처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 근로개선지도과,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